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일까요?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6대분야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공익침해행위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강
위해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안전
부실시공,
기준 미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환경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무단방류 등



소비자의 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



공정한 경쟁
가격 담합,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신고서 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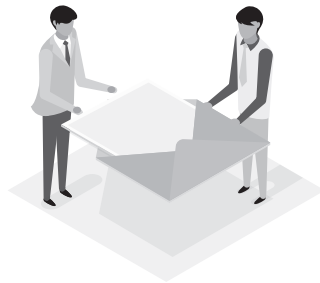


-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하는 자
-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의 내용
- ✓ 신고의 취지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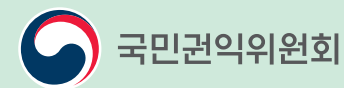
※ 공익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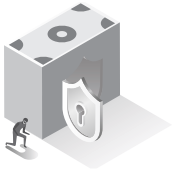
-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부패행위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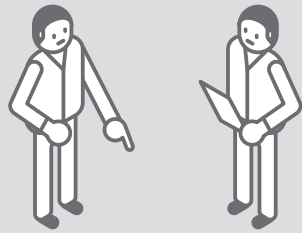


- ✓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약·유인
하는 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 방문 ·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

내부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국가·지방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지급

포상금

신고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추천·심사를 통해 지급

구조금

신고로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지급

※ 부패신고는 '19. 10. 17. 이후 신고부터 적용

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